

##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요령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7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과 관련한 허가절차, 허가 후 관리 등 공급기준의 세부내용과 화물의 집화·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추가 제출 서류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고시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6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**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**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화물을 집화·분류·배송하는 형태 (이하 "택배"라 한다)의 운송사업자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**제3조(시설 및 장비요건)** 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"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및 장비기준"이란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.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별도로 공고할 수 있다.

**제4조(제출서류)** ①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"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

여 고시하는 서류"란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일 이후부터 제3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택배 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전속운송 계약서 또는 장래 운송물량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택배 운송사업자의 확인 증명 필요)를 말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은 택배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③ 택배 운송사업자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(차량 확보 및 운영 계획, 운전자 근로계약 확인서 등)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5조(허가 절차)**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택배용 화물자동차 허가를 위하여 매년 허가시행 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②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쳐 허가한다.

③ 관할관청은 자가용 운전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택배를 담당하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에게는 허가하지 않는다.

④ 관할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절차를 수행하는데 있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.

**제6조(허가에 수반되는 사항)**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

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.

**제7조(허가 후 관리 등)** ① 택배 운송사업자는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

위해 허가를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운송업무 및 수수료 지급 등 관련 사항을 영업점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② 각 운송사업 종류별 연합회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6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활동을 위해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실제 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, 허가 받은 목적으로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및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양도하였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.

③ 이 고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④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고시에 따라 택배 운송만을 담당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전속운송 계약 현황 및 계약해지 현황, 택배 운송사업자가 허가 받은 차량의 운영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택배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⑥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제4항 전단에 따른 업

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.

⑦ 제6항의 비용은 관리 대상 차량 대수, 서비스 수준,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감안하여 택배 운송사업자,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이 포함된 협의체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⑧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제6항에 따른 수입·지출의 회계처리는 별도의 계정과목으로 하여야 하며, 수입·지출 내역을 제7항에 따른 협의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.

**제8조(재검토 기한)**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## **부칙**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